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20. 4. 24.>

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(제17조제5항 관련)

- 1.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
 - 가.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(이하 "입소·이용자"라 한다)의 입소·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 -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신재활 시설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등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.
 - 라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 · 이용자의 명단을 작성 · 보관하여야 한다.
 - 마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시설의 입소·이용을 원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미리 입소·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활 및 자립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- 바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 출·퇴근기록표(아동·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방문기록표)를 보관하고, 그 이용 현황을 월별로 정리·보관하여야 한다.
 - 사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·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2. 정신재활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가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·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
 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·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3. 급식,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
 - 가.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,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

성하여야 한다.

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영양사,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다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감염성 질환, 화농성 창상(化膿性 創傷)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·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안된다.
- 라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영양사,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마.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바. 정신재활시설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

4.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

- 가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·이용비용, 입소·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·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회계,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계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- 다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, 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.
- 라. 제6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5.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항

- 가.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: 영구
- 나.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: 영구
- 다.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일지: 3년
- 라. 정신재활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: 5년
- 마. 예산서 및 결산서: 5년
- 바. 총계정원장(總計定元帳) 및 수입・지출보조부: 5년
- 사.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: 5년
- 아.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: 3년

- 자. 소속 법인의 정관, 직원의 인사복무,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서류: 3
- 차. 입소·이용자의 명단, 생활상태, 진료, 투약,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 의 내용에 관한 서류: 10년
- 카.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금대장, 자재(원료)출납부, 제품출납부 및 제품매출대장: 5년
- 6. 정신재활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 - 가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, 재활활동요원, 재활활동보조원,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시설, 중독자재활시설등 정신질환자등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생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와 가족,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.
 - 다. 정신질환자등이 생활시설,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 환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라.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,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마. 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·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·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다.
 - 바. 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.

- 7. 정신재활시설의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
 - 가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·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, 사회생활에 적응하며,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) "사회재활활동"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,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.
 - 가)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
 - 나)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
 - 다)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
 - 라)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. 여가 및 문화활동
 - 마)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
 - 2) "직업재활활동"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내·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.
 - 가)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
 - 나)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
 - 다)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
 - 라)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
 - 마) 정신재활시설 내·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 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
 - 나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,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- 1)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등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
 - 2)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,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
 - 3) 직업재활활동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, 직업 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 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 - 다.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 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라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, 연령별,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 시로 면담하거나 관찰·지도를 행하고, 특이한 사항은 기록·유지하며, 보호

- 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마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·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바.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재활시설을 개방하고, 입소·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사. 정신질환자등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.